

# 減價償却의 本質

尹 芳 洙

<東洋세멘트監査室・稅務士>

## I. 序 言

오늘날 企業內部에서는 減價償却의 重要性을 크게 認知하고 있다. 즉 減價償却費는 資金計劃上의 一項目으로서 또는 原價構成의 一要素로서의 重要性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計上時期, 合理的인 計算方法 등을 熟知하고 있으므로 해서 稅務對策의 一環으로 그 意義를 크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本稿는 減價償却이 지니는 意義와 目的을 考察하고 그 計算要素 및 計算方法을 現行稅法規定과 相互關聯시켜 平易하게 解說함으로써 減價償却의 本質에 대한 理論的 基礎를 明白히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 II. 減價償却의 意義

減價償却에 대한 意義는 子구하나 普遍的 妥當性을 가진 一般的 見解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減價償却은 每事業年度마다 固定資産의 損耗額을 推定하고 그 推定損耗額을 當該 固定資産의 帳簿價額에서 減少시켜 주는 會計技術이다.<sup>1)</sup> 이 경우 減價償却後의 固定資産殘額은 그 固定資産의 能率을 表示하는 尺度가 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固定資産의 賣却價値를 表示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後述하는 減價償却의 目的에서 再論하겠지만 減價償却의 定義를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단지 會計事務上의 절차에 지나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우기 AIA(現美國

會計士協會)에서 規定하고 있는 減價償却에 대한 定義를 紹介해 보면 그 뜻은 더욱 明白해진다.<sup>2)</sup>

즉 減價償却이라고 하는 것은 固定資産의 原價 또는 그 外의 基礎價格에서 殘存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當該固定資産의 耐用年數에 걸쳐 規則的인 또는 合理的인 方法에 의해서 配分하는 一連의 計算制度이다. 減價償却의 本質을 AIA 規定과 같이 原價配分說이라고 볼 때 減價償却은 會計上의 期間損益을 正確하게 計算하기 위한 人爲的인 假定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角度를 달리하여 보면 減價償却은 固定資産에 投下된 資本을 流動資産化하여 回收하는 方法이기도 하다. 그 記錄過程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第1次의 記錄에서 資産으로 會計處理되었다가 第2次의 記錄에서 人爲적인 形式計算方法에 의하여 費用으로 計算하는 것이다.<sup>3)</sup> 위 過程을 分介의 法則에 따라 記帳한다면

第1次記錄 Dr. 固定資産 × × Cr. 現金 × × × ×  
第2次記錄 Dr. 減價償却費 × Cr. 固定資産 × ×  
으로 되며 第2次記錄의 減價償却費는 現金支出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費用(原價要素)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固定資産(土地等 非償却資産 除外)의 購入時에 一時巨額의 資金이 投下되고 그 以後인 耐用年數에 걸쳐 每期에 減價償却費로 計上될 때에는 現金支出이 發生하지 않기 때문에 流動資産의 一部를 企業內部에 留保하는 結果가 된다.

以上 減價償却의 本質에 대한 여러 見解를 綜合하여 보면 그 意義는 결국 固定資産의 價値移

轉에 대한 計算的 反映<sup>4)</sup>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 III. 減價償却의 目的

減價償却의 目的은 다음 세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1. 固定資產投資原價의 配分(期間損益計算目的)

會計實務上 固定資產을 購入 또는 取得한 該當年度나 廢棄하게 된 當年度에 그 原價金額을 損費로 計上한다면 그것은 期間損益計算의 正確이라는 會計本來의 目的에 背馳될 것이다. 따라서 固定資產의 購入時로부터 廢棄時까지 利用期間에 걸쳐 각 年度別로 投資原價를 配分하는 것이 減價償却의 第1의 目的이다. 期間損益이 精確하게 算出되어야만 原價計算 역시 그 妥當性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減價償却은 固定資產에 대한 投資原價를 理論的 모순 없이 精確하게 配分함으로써 期間損益 및 原價算定의 精確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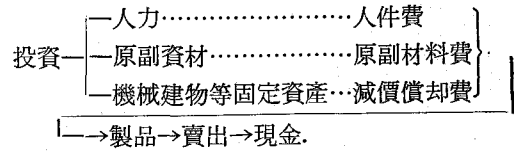
#### 2. 資產의 評價

固定資產은 사용한 經過에 따라 使用價值 및 交換價值(轉賣價值)가 감소된다. 따라서 減價償却이 매년 累積될수록 그 固定資產의 帳簿價額은 減價償却累積額만큼 감소되는 것이다. 減價償却後 固定資產殘額은 그 固定資產에 拘束되고 있는 投資額을 표시한다. 이는 固定資產 價値를 評價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償却後 固定資產殘額은 前述한 바와 같이 當該固定資產의 능률의 尺度내지 賣却價値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賣價決定에 基礎資料는 될 수 있으며 실제 賣却될 때에 固定資產 賣却損益의 算定에 기여할 뿐이다.

#### 3. 固定資產投資의 回收(自己金融의 手段)

減價償却費의 計上에 의해 固定資產은 서서히 流動化되어 그 投資原價가 回收된다. 즉 固定資產投資原價의 일부인 減價償却費가 製品原價에

移轉되어 그 製品의 賣出에 의해 現金으로 回收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圖示하면



의 過程을 거쳐 最初의 投資額보다 많은 現金이 回收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減價償却費의 計上에 의해 內部資金이 留保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減價償却費를 計上하는 時點에서 內部資金이 留保되는 것은 아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減價償却費는 現金支出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비용이다. 이와 같이 現金支出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인 減價償却費를 計上하므로 인하여 一事業年度의 當期純利益은 그만큼 감소된다. 따라서 法人稅課稅額이 적어지며 社外로 流出되는 株主配當金 또한 줄어들게 되어 결국 內部資金 留保의 效果를 가져 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叙上한 바와 같이 減價償却費의 計上에 의해 內部資金이 留保되면 이것은 훌륭한 自己金融<sup>5)</sup>의 役割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自己金融은 固定資產의 耐用年數가 모두 經過되었을 때에 他固定資產의 新規代替를 위한 資金確保의 수단도 되는 것이다.

### IV. 減價償却計算의 基本要素

上述한 減價償却의 3가지 목적을 가장 效果的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減價償却의 計算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減價償却計算의 기초가 되는 基本要素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 1. 基礎價格

基礎價格은 減價償却計算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 償却最高限度額으로 通常 固定資產의 取得原價를 指稱한다. 그러나 取得原價와 基礎價格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法人稅法에서는 取得原價를 取得價額이라 表現하고 있으며 基礎價格의 最初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法人稅法 施行令 第48條 第2項에서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買入한 固定資產은 買入當時의 그 代價(登錄稅, 取得稅, 其他附帶費用)을 包含한다)

② 自己가 建設, 製作 등에 의하여 取得한 固定資產은 原材料費, 勞務費, 運賃, 荷役費, 保險料, 手數料, 公課金(登錄稅와 取得稅를 包含한다), 設置費, 其他附帶費用의 合計金額.

③ 前①② 以外の 固定資產은 取得當時의 正常價額

한편 基礎價格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資本的 支出과 收益의 支出의 구분이다. 資本的 支出은 基礎價格에 算入하고 收益의 支出은 基礎價格에 算入하지 않고 期間費用으로 처리해야 한다.

法人稅法 施行令 第57條에서 資本的 支出과 收益의 支出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法人이 所有하고 있는 固定資產의 耐用年數를 증가시키거나 그 資產의 價値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費用은 資本的 支出이고 當該固定資產의 原狀을 회복하거나 能率維持를 위하여 支出한 費用은 收益的 支出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資本的 支出과 收益의 支出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細則을 두고 있다(法人稅法 施行規則第33條).

## 2. 配分基準

配分基準에는 耐用年數 및 豫定總生産量 또는 總作業量 등이 있다.

### 1) 耐用年數

耐用年數라 함은 正常的인 조건하에서 固定資產이 廢棄될 때까지의 有效見積年限을 말한다<sup>6)</sup>.

固定資產의 耐用年數라 하더라도 여러가지의 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뜻을 명백하게 알지 않으면 안된다. 耐用年數는 自然年數와 有效年數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7)</sup> 前者는 使用 또는 作業으로 인한 磨損 등의 物理的 요인에 의하여 最終破棄時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後者는 不適當陳腐化 등의 機能的原因에 의하여 그 固定資產이 廢棄處分될 때까지의 期間을 말한다. 減價償却의

本質上 耐用年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有效年數를 말하나 이것은 固定資產의 種類 및 構造 등에 따라 千差萬別이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을 하는 것은 물론 대략 추정하는 것도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稅法에서는 이러한 個人的 豫測과 推定을 不許하고 固定資產種類別로 耐用年數를 規定하여 列舉하고 있다(法人稅法施行規則 第27條).

### 2) 豫定總生産量 또는 總作業量

鑛山, 森林 등의 消耗性資產을 대상으로 하는 營業의 경우는 採掘 또는 伐採를 하므로 말미암아 固定資產의 價値가 감소하기 때문에 年數에 비례하여 總生産量을 기준으로 償却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 3. 殘存價額

殘存價額이라고 하는 것은 固定資產이 耐用年數에 도달하여 廢棄處分할 때에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見積價額을 말한다. 이 殘存價額은 概念上 救濟價額(salvage value) 및 廢物價額(scrap value)의 두가지로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sup>8)</sup>

前者는 固定資產이 耐用年數가 經過되어 廢棄處分할 때에 他用途로 이용할 수 있는 價額(예컨대 事務室用建物を 倉庫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을 말하며 後者는 他用途로 전혀 轉用할 수 없어 廢物 그대로 처분되는 價額을 말한다. 理論上 救濟價額이 廢物價額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稅務上으로는 이 兩者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殘存價額은 有形固定資產에 있어서는 取得原價의 10/100으로 看做하고 無形固定資產은 零으로 取扱하고 있다(法人稅法施行令 第55條).

## V. 減價償却의 計算法

減價償却은 前述한 AIA의 定義에서 보는 바와 같이 固定資產의 基礎價額에서 殘存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가지고 그 償却總額을 除하여 各事業年度의 비용으로 計算하는 방법인 것이다.

減價償却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計算해야만 恣意性을 制限하게 되고 各事業年度마다 負擔의

공평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각 事業年度의 損益計算에 있어서 減價償却計算을 恣意的으로 행한다면 當該年度의 損益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會計基準의 正確性原則을 沮害하는 要因이 된다.

減價償却의 計算時期는 通常 當該固定資産을 사용하기 시작한 翌年으로 본다. 그러나 稅法에서는 新規取得 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 計算時期를 事業年度 終了日 6月 以前에 取得한 것에 限하여 當該年度의 減價償却費를 計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法人稅法施行令 第58條 1項).

反面에 原價計算上으로는 그 翌月부터 適用計算해야만 原價算定의 正確性을 기할 수 있다.

減價償却의 計算方法은 時間的 基準에 의하는 방법과 數量的 基準에 의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 時間的 基準에 의하는 方法

이 방법에는 定額法 및 定率法의 두 가지가 있다.

#### 1) 定額法

定額法은 直線法 또는 均等償却法이라고도 한다. 그 算式은 다음과 같다.

$$\text{各年度의 償却額} = \frac{\text{基礎價格} - \text{殘存價額}}{\text{耐用年數}}$$

이 방법을 採擇할 때에는 每事業年度마다 同額의 償却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設備資産이 導入時부터 廢棄時까지 每年 均等적으로 磨損되어 갈 경우에는 各 事業年度에 있어서 費用負擔의 公평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計算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實務上 널리 지지를 받고 있다.

#### 2) 定率法

이 방법은 未償却殘額法이라고도 하며 每年度마다 未償却殘額에 대하여 一定率을 乘하여 償却額을 산출하는 것이다.

償却을 해 나감에 따라 未償却殘額은 감소되며 따라서 償却額 자체도 매년 줄어들게 된다. 前記 定額法의 償却額이 每年均等하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定率法으로 計算하기 위해서는 各 耐用年數에 따른 定率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定率을 구하는 公式은 다음과 같다.

$$\text{定率} = \sqrt[n]{\frac{\text{殘存價額}}{\text{基礎價格}}} \quad n: \text{耐用年數}$$

定率을 구하는 데는 그 算式이 복잡하므로 稅法에서는 有形固定資産 및 無形固定資産의 耐用年數別定率을 一目瞭然하게 표시하고 있다(法人稅法施行規則 第27條).

이 방법은 固定資産의 能率이 良好한 初年度에 多額의 償却을 하고 能率이 低下된 後年度에 修繕費가 所要되는 만큼 償却額이 감소되어 가므로 固定資産에 대한 費用負擔의 公평을 기하려는 理論的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어떤 固定資産의 基礎價格이 1,000원, 殘存價額이 그 10%인 100원, 耐用年數가 5年이라고 가정하면 定額法과 定率法의 計算은 <表-1>과 같이 될 것이다.

<表-1> 例 示 (單位: 원)

耐用年數	定額法			定率法		
	償却額	償却累計額	帳簿價額	償却額	償却累計額	帳簿價額
	$\frac{1,000 - 100}{5} = 180$			$\sqrt[5]{\frac{100}{1,000}} = 36.9\%$		
1	180	180	820	369	369	700
2	180	360	640	232	601	460
3	180	540	460	147	748	280
4	180	720	280	93	841	160
5	180	900	100	59	900	100
計	900			900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定額法은 每年 償却額이 180원으로 均等한데 反하여 定率法은 初年度에는 償却額이 定額法보다 2倍以上의 高額으로 되다가 耐用年數가 經過됨에 따라 遞減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兩方法 모두 耐用年數 滿期에는 帳簿價額이 期初價格의 10%인 100원만 남게 된다. 이것이 殘存價額인 것이다.

### 2. 數量的 基準에 의한 方法

이 방법에는 生産量比例法과 作業時間比例法이 있다. 그러나 後者は 우리나라 稅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1) 生産量比例法

減價償却의 方法으로서 이 生産量比例法이 합리적으로 認識되는 固定資産이 있다. 즉 鑛山關係의 設備는 鑛物의 探掘量에 비례하여 償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山林, 立木을 伐採處分할 目的으로 山林의 開發을 행하는 경우에도 鑛山에서 鑛物을 探掘하는 것과 꼭 같이 減價償却을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方法이 무난한 것이다.

이의 算式은

償却額 = 實際生産量 ×  $\frac{\text{取得原價} - \text{殘存價額}}{\text{豫定總生産量}}$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作業時間比例法

作業時間比例法은 耐用年數에 따라 作業時間 또는 機械運轉時間을 基準으로 하는 比例的 減價償却 方法이다. 每年 또는 每期の 總作業時間을 見積하고 豫定總作業時間에서 減價償却額을 除하여 1시간당의 償却額을 구한다. 이 시간당 償却額을 每年 또는 每期の 實際作業時間에 乘하여 償却額을 計算하는 것이다.

이의 算式은

實際作業時間 ×  $\frac{\text{取得原價} - \text{殘存價額}}{\text{豫定總作業時間}}$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償却法의 理論的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減價는 作業時間에 比例하여 發生하는 것이기 때문에 作業時間이 많을 때에 그에 比例하여 多額의 償却을 행하고 作業時間이 적을 때에 小額의 償却을 행한다는 것이다<sup>9)</sup>.

이 方法의 結점은 첫째, 總作業時間을 精確하게 見積한다는 것은 실제로 困難하다는 것이며 둘째, 減價는 반드시 作業時間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作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減價는 발

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稅法에서도 이 作業時間比例法은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定論法, 定率法, 生産量比例法의 3가지만 規定하고 있다 (法人稅法施行令 第50條).

## VI. 結 言

以上에서 減價償却에 대한 定義, 目的, 計算要素, 計算方法을 論議해 보았다. 이는 주로 會計學的 側面에서 基礎理論을 紹介·叙述하는데 그쳤지만 企業經營의 側面에서 볼 때에는 經營政策 (財務對策, 稅務對策)과 直結되는 중요한 要素라 아니 할 수 없다. 모름지기 諸般 經營政策은 그 樹立過程에 있어서 理論的 뒷받침이 뒤따라야만 實效를 거둘 수 있겠지만 자칫 度外視하기 쉬운 이 減價償却이야말로 理論의 바탕 없이는 試行錯誤의 誤謬를 자주 범하게 되어 會社의 不利益을 招來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經營實務者는 항상 減價償却의 중요한 目的을 念頭에 두면서 부단한 노력으로 減價償却理論을 適所에 適用해야 될 줄 안다. 예컨대 是·否認이 없는 정당한 稅務申告, 適切한 原價項目, 效率的인 資金源泉 등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企業目標에 一助가 되어야 할 것이다.

- 註 1) 橋濱市立大學 會計學 研究室編, 1958, 會計辭典, p. 218.  
 2)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22, 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1944.  
 3) 趙益淳稿, 減價償却理論에 對한 研究, 經營研究 第1卷 第2號, 1963, p. 3.  
 4) 木村和三著, 新版減價償却論, 1969, p. 7.  
 5) 自己金融이라고 함은 企業 스스로가 經營活動을 통하여 이룩한 資本增殖部分을 企業內部에 溜保한 것을 말한다.  
 6) 橋濱市立大學會計學研究室編, 前揭書, p. 224.  
 7) 鄭守永著, 全訂版新會計學, 博英社刊, 1969, p. 113.  
 8) 趙益淳著, 現代會計學, 博英社刊, 1963, p. 265.  
 9) 橋濱市立大學會計學 研究室編 前揭書 p. 227.